

문서번호	서울어린이대공원-4923
보존기간	준영구
결재일자	2019.06.04.
공개여부	공개

★과장	팀장	서울어린이대공원장	문화체육본부장	
협 조				

서울어린이대공원 편익시설(매점) 사용·수익허가 계획(안)

2019.

서울어린이대공원 편익시설(매점) 사용·수익허가 계획(안)

어린이대공원 내 후문매점을 운영해온 기존 사용·수익 수허가자의 사용기간이 만료됨에 따라, 신규 수허가자를 선정하여 운영하고자 함.

위탁현황

구 분	운영업체	허가기간	허가면적	사용료	비 고
후문 매점	(주)쌈지농부	'16.5.21.~ '19.5.20.(3년)	252.28m ²	59,000천원 (부가세 포함)	'19.5.23 명도 완료

현장사진



매장 전경



매장 내부

추진방향

판매품목

- 빵류, 과자류, 음료수 및 생수, 아이스크림 등 시중에서 공식적으로 판매하는 브랜드 제과회사 제품으로 시중 유통가격 수준으로 판매
- 그 외 제품은 공원과 사전 합의를 통하여 결정

주류(맥주 및 무알콜 맥주 포함), 담배, 복권, 가스 등 불(열)을 이용한 무허가 (무신고) 조리식품 및 기타 공원에서 금지하는 품목은 판매 금지

고객 서비스 만족도 제고를 위하여 직원(아르바이트 포함)들을 대상으로 분기 1회 CS교육(공단 사내강사 또는 외부 전문기관 CS교육) 실시 의무화

□ 세부 추진계획

- 선정방법 : 공개경쟁입찰(최고가)
- 허가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1.12.31까지
 - 「어린이대공원 재조성 기본계획」에 따른 재조성 사업기간 반영
 - 성수기(4~6월) 계약종료 시 명도불이행 가능성 등 고려
- 허가면적 : 252.28 m^2 (매장 33.18, 창고 11.2, 포장면 207.9)
- 예정가격 : 122,381,030원 (부가가치세 포함)

《 주요 허가조건 》

- 첫해의 사용료는 최고입찰가로 하며, 2차년도 이후의 사용료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31조 제3항에 의거하여 부과한다.
- 계약체결 시 사용료의 30% 이상의 계약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거나 이행 보증보험증권으로 제출하여야 한다.
- 건물 및 시설물 대금 상당액 이상에 해당하는 화재보험계약과 제3자영업배상 책임보험을 체결하고 그 보험증권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.
- 사용·수익허가가 종료되는 경우 지정하는 기한 내에 사용·수익재산을 원상으로 회복하여 조건 없이 반환하여야 한다.

□ 추진일정

- ~ 2019 .5. 5 : 일상감사 및 사전심의 실시(감사실·기획조정실·총무처)
- ~ 2019. 5. 10 : 감정평가 실시
- ~ 2019. 6. 4 : 본부장 방침 및 입찰 공고 의뢰
- ~ 2019. 6. 21 : 운영자 선정 및 운영 개시

□ 행정사항

- 예정가격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 실시(→감정평가법인)
- 일상감사 및 사전심의 요청(→감사실·기획조정실·총무처)
- 사용·수익허가 입찰 공고 의뢰(→총무처)

□ 위치도 및 도면 ... 후문 입구 좌측(놀이동산 맞은편)

